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8-26

서 울 행 정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5구합430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5. 6. 11.
판 결 선 고	2015. 7.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9. 30. 원고에게 한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12. 27. B으로부터 [redacted] [redacted]구 C건물 1012동 1902호(이하 '이 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8-26

건 주택'이라 한다)를 590,000,000원에 매수하고, 2013. 12.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원고의 아들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에 해당하는 D(E)은 1999. 2. 13. [redacted]군 F 지상 건물(단층 주택 71.55㎡와 단층 창고 14.3㎡, 단층 변소 4.5㎡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 '별건 주택'이라 한다) 중 1/5 지분에 관하여 1999. 2. 8.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D이 별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원고의 이 사건 주택 취득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6조의2 제1항에서 취득세 면제 요건으로 정한 '생애 최초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안내를 받고, 2014. 1. 2.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취득과 관련하여 주택유상거래 세율(1.1%)을 적용한 취득세 5,900,000원, 지방교육세 590,000원 합계 6,49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의 모친 G(1921년생)은 2014. 3. 5.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단10039호로 위 D 등을 상대로 별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및 2012. 12. 16. 협의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마. 위 소송에서 2014. 6. 25. 자백간주로 인한 원고 승소판결(무변론)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에 따라 2014. 8. 20. 별건 주택에 관한 D 등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바. 원고는 2014. 9. 16. 피고에게 법원 판결로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9. 30. 이를 거부하였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8-26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2. 19.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redacted]시장은 2015. 1. 23.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2, 갑 제3호증, 갑 제4, 5호증의 각 1, 2,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별건 주택에 관한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판결에 의하여 말소되어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는 소급하여 생애 최초 주택 취득자가 된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취득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1452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제1항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하여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해 주는 특혜규정으로서, 동거인을 제외한 세대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8-26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요건으로 하고 있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원고의 아들이자 세대원인 D이 별건 주택에 관한 지분을 증여받아 소유하고 있었음이 분명한 점, ③ 원고가 피고로부터 취득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이후에 무변론 자백간주 판결을 통해 D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는바, 위 소송의 당사자가 원고의 모친과 원고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위와 같은 소 제기 경위를 설명하지 않고 있는 점, ④ 이처럼 D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위 자체가 석연치 않을 뿐만 아니라, 자백간주 판결을 통하여 후발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당연무효였다거나 그 당시까지 D이 별건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 자체가 부정된다고 할 수 없는 점, ⑤ 달리 원고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제3항에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간주하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연욱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8-26

판사 민병국

판사 박혜영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8-26

관계 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의2(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①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동거인은 제외한다)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세대별 합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면제대상이 아닌 자가 취득세를 면제받은 경우 그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1. 20세 이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 이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미혼인 35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세대주에 속한 세대원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만을 세대원으로 두고 있는 세대
 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또는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그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
 다.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 등을 한 경우로서 본인·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을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으로 두고 있는 세대
 라. 직계존속 중 1명 이상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면서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1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사실이 있는 세대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를 적용할 때 형제·자매(배우자의 형제·자매를 포함한다)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으로 두고 있는 세대
2. 제1호에 따른 세대주의 배우자
3. 35세 이상인 단독 세대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8-26

4. 20세 이상 35세 미만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세대주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에 따른 세대를 분가하여 주민등록표상의 새로운 세대주 또는 배우자로 등록할 것이 예정된 자

나. 직계존속(부모로 한정한다)이 모두 사망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형제·자매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주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본다.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취득일 현재의 도시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주택소재지역에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해당 주택소재지역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군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그 주택을 처분하였거나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로 한정한다.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다.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

3.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다만, 취득일 현재 둘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취득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5. 취득일 현재 「지방세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시가표준액이 100만 원 이하의 주택(멸실된 주택을 포함한다)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세대주 및 배우자의 직전 연도 소득 및 무주택자 여부 등을 확인하는 세부적인 기준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끝.